

올바른 섬유제품 유통을 위한 가이드

KC 안전기준 개정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Contents

Your Reliable Partner
SINCE 1965

-
1. KC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성인/아동/유아)
 2.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KS K 0021
-

1

KC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표시사항 및 제품구분

개정 목적

-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의 아릴아민 시험법을 새로운 방법으로 변경하고, **재사용 우모 및 수입연월** 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표시사항 규정** 개선
- 유아용 섬유제품 및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의 세부분류를 단순화**하는 등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



적용 일시

- 시행일 : **2024년 3월 7일 적용**
- 시행일에 대한 예외적용
 - ➔ 기존고시('21.10.27) 와 이번고시('24.3.7)는 **1년간 병행 적용(~ '25. 3. 6)**
 - ➔ 따라서, 기존 표시사항 및 제품 분류에 대해서 1년간 동일 관리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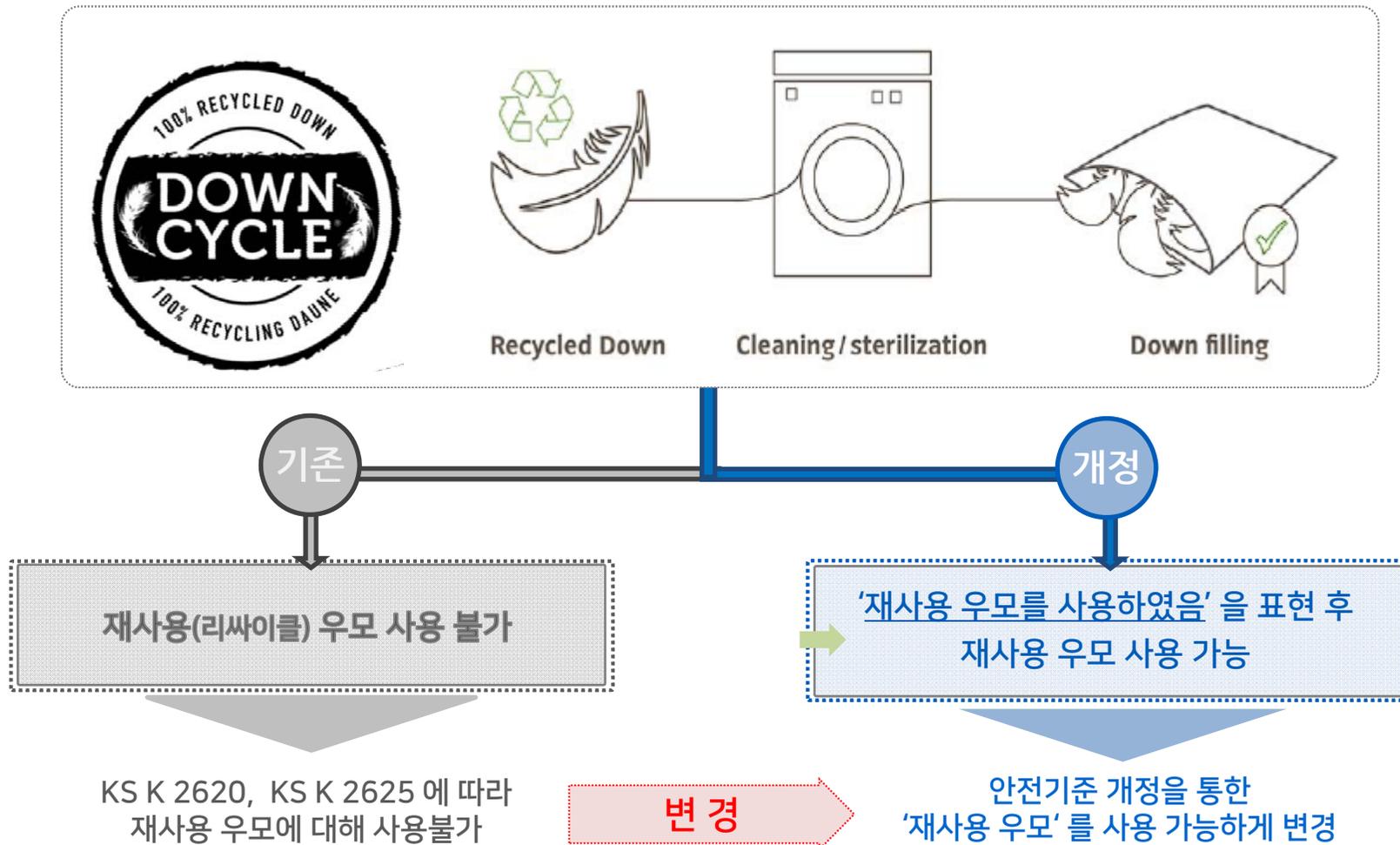
주요 개정사항(요약)

대상	내용		기 존	개 정	규제 현황	
성인 아동 유아	표시사항 개선	①	'재사용 우모' 규정	사용불가	'재사용 우모' 여부 기재 / 사용가능	완화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사용 · 표현 제한적	사용가능 우모범위 및 표현 확대	완화
		③	제조 및 수입연월 표시	수입연월 표현불가	수입연월 표현가능	완화
		④	혼용률 특례 표시	산정제외 대상 필수기재	산정제외 대상 자율 기재	완화
		⑤	치수 표기	기재 시 KS 방식 필수 충족	표현 방식 자율	완화
		⑥	취급상 주의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內 취급표시방법 기재	KS K 0021 에 의해 표기	동일
아동 유아	제품 세부구분 단순화		제품구분 10종	제품구분 6종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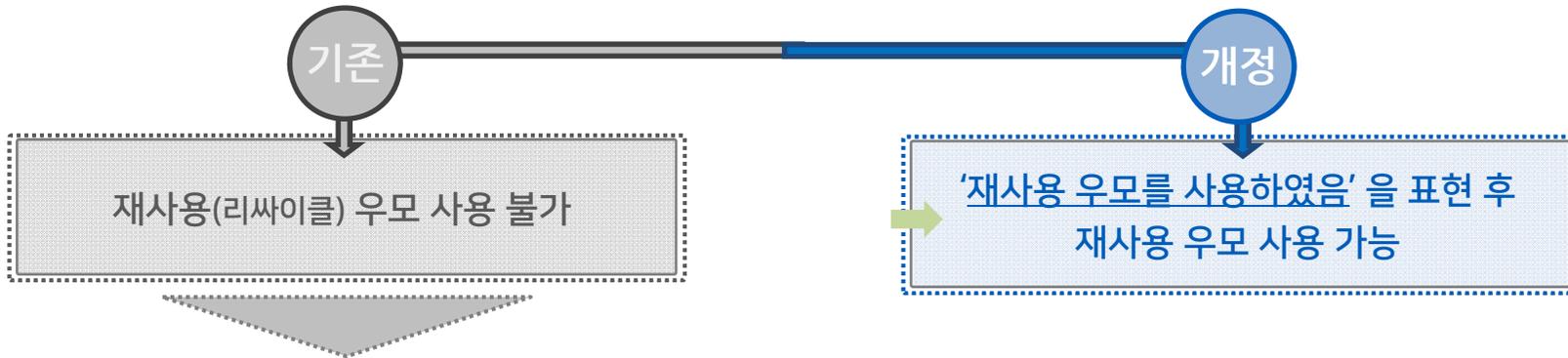
주요 개정사항(요약)

대상	내용	기 존	개 정	규제 현황	
성인 아동 유아	표시사항 개선	① '재사용 우모' 규정	사용불가	'재사용 우모' 여부 기재 / 사용가능	완화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사용 · 표현 제한적	사용가능 우모범위 및 표현 확대	완화
		③ 제조 및 수입연월 표시	수입연월 표현불가	수입연월 표현가능	완화
		④ 혼용룰 특례 표시	산정제외 대상 필수기재	산정제외 대상 자율 기재	완화
		⑤ 치수 표기	기재 시 KS 방식 필수 충족	표현 방식 자율	완화
		⑥ 취급상 주의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內 취급표시방법 기재	KS K 0021 에 의해 표기	동일
아동 유아	제품 세부구분 단순화	제품구분 10종	제품구분 6종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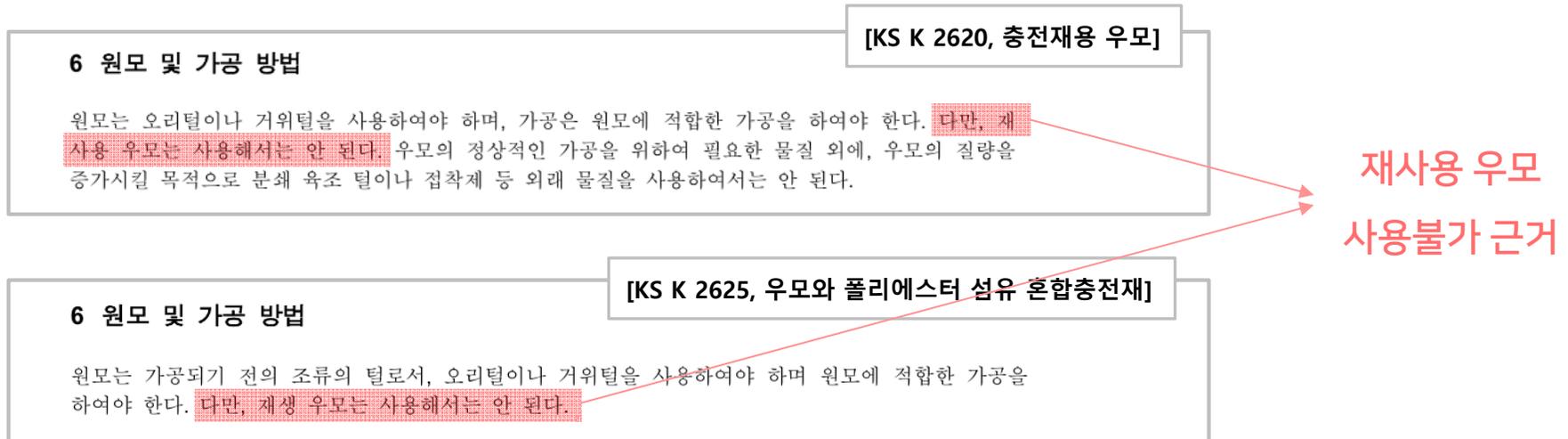
■ 표시사항 개선 - ① '재사용 우모'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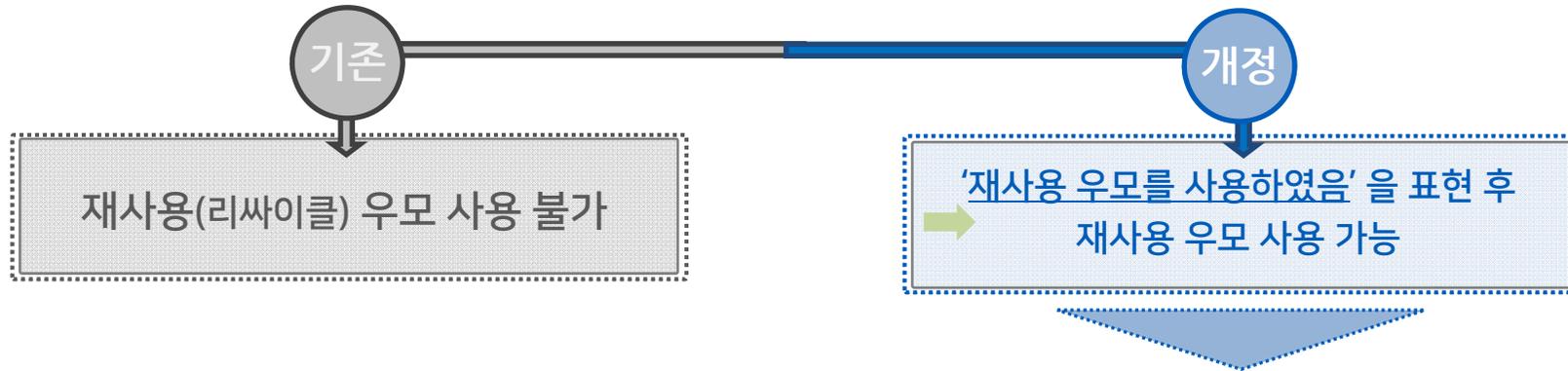
■ 표시사항 개선 - ① '재사용 우모' 규정



✓ 기존 안전기준의 경우, (KS K 2620 / 2625) 에 따라 우모 충전재 사용 기준을 따름



■ 표시사항 개선 - ① '재사용 우모' 규정



✓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개정을 통해, 재사용 우모의 정의 및 사용 근거 명시

재사용 우모
사용근거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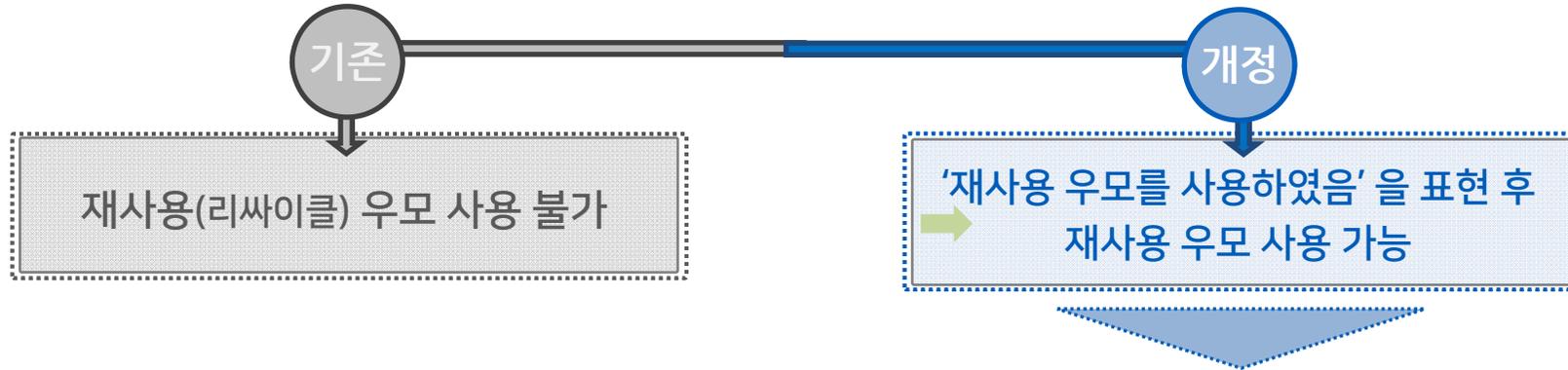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부속서]

3.10 "재사용우모"라 함은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하였던 우모(소비자 사용 후 수거된 제품에서 채취된 우모)를 말한다.

7.1.3.1 우모제품은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가 ~(중략)~ 재사용 우모가 사용된 경우, 조성 혼합률은 원모와 동일하게 구분하며, "재사용 우모가 사용되었음"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 동물복지, 지속가능 패션 등 사회적 관심 및 요구로 인한 개정

표시사항 개선 - ① '재사용 우모' 규정



제품예시		제품 표현	
겉감	나일론 100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등판	폴리에스터 100 %	등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솜털 50 % 깃털 50 %	충전재 ✓	솜털 50 % 깃털 50 % (재사용 우모가 사용되었음)

재사용 우모 사용시

주요 개정사항(요약)

대상	내용	기 존	개 정	규제 현황	
성인 아동 유아	표시사항 개선	① '재사용 우모' 규정	사용불가	'재사용 우모' 여부 기재 / 사용가능	완화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사용 · 표현 제한적	사용가능 우모범위 및 표현 확대	완화
		③ 제조 및 수입연월 표시	수입연월 표현불가	수입연월 표현가능	완화
		④ 혼용룰 특례 표시	산정제외 대상 필수기재	산정제외 대상 자율 기재	완화
		⑤ 치수 표기	기재 시 KS 방식 필수 충족	표현 방식 자율	완화
		⑥ 취급상 주의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內 취급표시방법 기재	KS K 0021 에 의해 표기	동일
아동 유아	제품 세부구분 단순화	제품구분 10종	제품구분 6종	완화	

■ 표시사항 개선 -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㉑	우모 제품 충전재 정의	-	대상 정의
㉒	우모 제품구분 표시	- 솜털(다운) 제품 -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제품 - 깃털(페더) 제품 -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 4개의 제품구분으로 필수 표시 대상	- 솜털(다운) 제품 제품구분 단순화로 선택적 표시
㉓	품질기준 미달의 우모 표시	품질기준 미달 우모 사용불가	'지정외 우모' 표시 로 사용가능

■ 표시사항 개선 -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 우모 제품 충전재 정의	-	대상 정의

기 존

7.1.3 다운제품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7.1.3.1 다운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구분은 KS K 2620 의 4. 조성에 따라 솜(솜털, 깃털(페더)혼합제품, 깃털(페더)제품 등) 또는 다운(다운털, 깃털, 기타로 구분하여 퍼센트 (%)로 표시할 수 있다. 또는 다운제품의 동물명을 병기할 수 있다. 이외에 기타로 합성섬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우모(솜털, 깃털)와 조성섬유를 구분하여 퍼센트 (%)로 표시할 수 있다.

정의 없음



개 정

7.1.3 우모제품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7.1.3.1 우모제품은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¹⁾가 ~(중략)~ 표시할 수 있다.

주 1. 우모제품에 사용된 충전재라 함은 보온 목적을 위하여 의복 등에 채워진 우모 또는 합성섬유를 통칭하며, 보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된 심지 및 다운백 등은 제외한다.

■ 표시사항 개선 -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㉞ 우모 제품구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솜털(다운) 제품 -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제품 - 깃털(페더) 제품 -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 4개의 제품구분으로 필수 표시 대상	- 솜털(다운) 제품 제품구분 단순화로 선택적 표시

기 존

7.1.3 다운제품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7.1.3.1 다운제품에 대하여 제품의 구분은 KS K 2620 의 4. 조성에 따라 '솜털(다운)제품,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혼합제품, 깃털(페더)제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중략)~
 다만, 솜털이나 깃털 이외에 기타로 합성섬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이하 생략)~.

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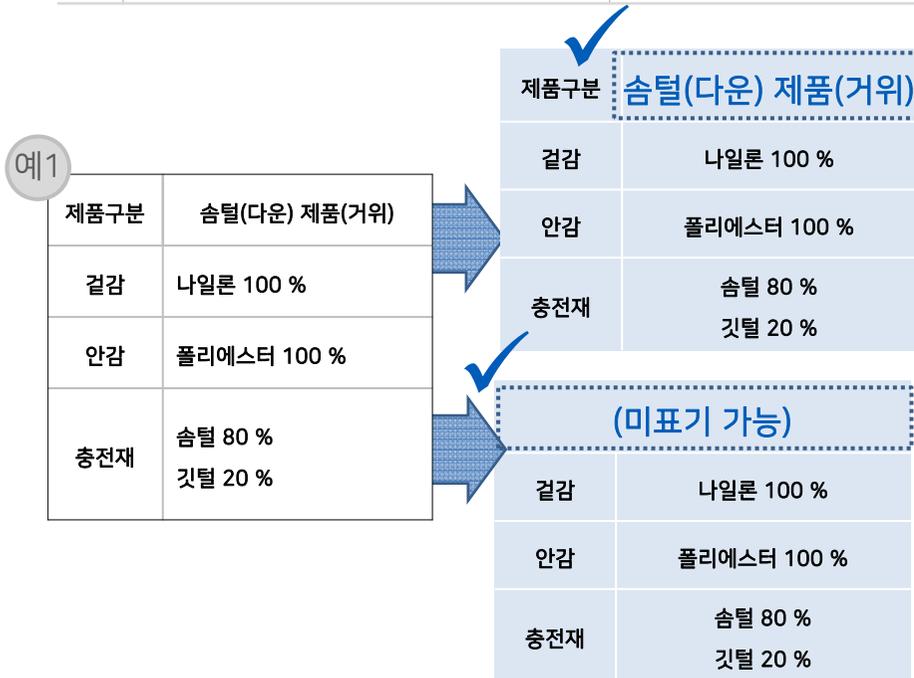
7.1.3 우모제품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

7.1.3.1 우모제품은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가 KS K 2620 5항의 솜털(다운) 제품의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솜털(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우모 제품에 대한 제품구분을 단순화하고,
 솜털(다운)제품에만 강조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우모 제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 표시사항 개선 -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㉞ 우모 제품구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솜털(다운) 제품 -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제품 - 깃털(페더) 제품 -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 4개의 제품구분으로 필수 표시 대상	- 솜털(다운) 제품 제품구분 단순화로 선택적 표시 (이외 구분 자율적 표기 가능)



→ 두 표현 방식 모두 가능



→ 두 표현 방식 모두 가능

■ 표시사항 개선 -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㉞ 우모 제품구분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솜털(다운) 제품 -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제품 - 깃털(페더) 제품 -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 4개의 제품구분으로 필수 표시 대상	- 솜털(다운) 제품 제품구분 단순화로 선택적 표시 (이외 구분 자율적 표기 가능)

예3

제품구분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제품(오리)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솜털 50 % 깃털 50 %

제품구분	솜털(다운) 및 깃털(페더) 혼합제품(오리)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솜털 50 % 깃털 50 %
(미표기 가능)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솜털 50 % 깃털 50 %

→ 두 표현 방식 모두 가능

예4

제품구분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우모 75% (솜털 80 % 깃털 20 %) 폴리에스터 25%

제품구분	우모 및 인조섬유 혼합제품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우모 75% (솜털 80 % 깃털 20 %) 폴리에스터 25%
(미표기 가능)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충전재	우모 75% (솜털 80 % 깃털 20 %) 폴리에스터 25%

→ 두 표현 방식 모두 가능

■ 표시사항 개선 -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㉔ 품질기준 미달의 우모 표시	품질기준 미달 우모 사용불가	' <u>지정외 우모</u> ' 표시 로 사용가능

< 충전재 우모의 품질기준 >

조성구분	조 성													
	100/0	95/5	90/10	85/15	80/20	75/25	70/30	60/40	50/50	40/60	30/70	20/80	10/90	0/100
솜털	100	95 이상	90 이상	85 이상	80 이상	75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이하
솜털오라기 깃털 오라기	없음	5 이하	10 이하	15 이하	15 이하	15 이하	14 이하	12 이하	10 이하	11 이하	12 이하	13 이하	14 이하	15 이하
육조깃털 손상깃털 협잡물	없음	5 이하												

- 우모 품질 기준 범위를 벗어날 경우
- 기타 수조류 이외 우모를 사용할 경우

사용 불가

- 우모 품질기준 범위에 벗어날 경우
- 기타 수조류 이외 우모를 사용할 경우

'지정외 우모' 로 분류하여 표현 후 사용

■ 표시사항 개선 -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규정

개정사항	기 준	개 정
㉔ 품질기준 미달의 우모 표시	품질기준 미달 우모 사용불가	' <u>지정의 우모</u> ' 표시 로 사용가능

- 우모 품질기준 범위에 벗어날 경우
- 기타 수조류 이외 우모를 사용할 경우

→ '지정의 우모' 로 분류하여 표현 후 사용

개정

7.1.3.1 우모제품은 제품에 사용된 전체 충전재가 KS K 2620 5항의 ~(중략)~.
 다만, 수조류 이외의 우모를 사용하거나 우모 충전재가 제품 구분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우모**로 분류하고 함량을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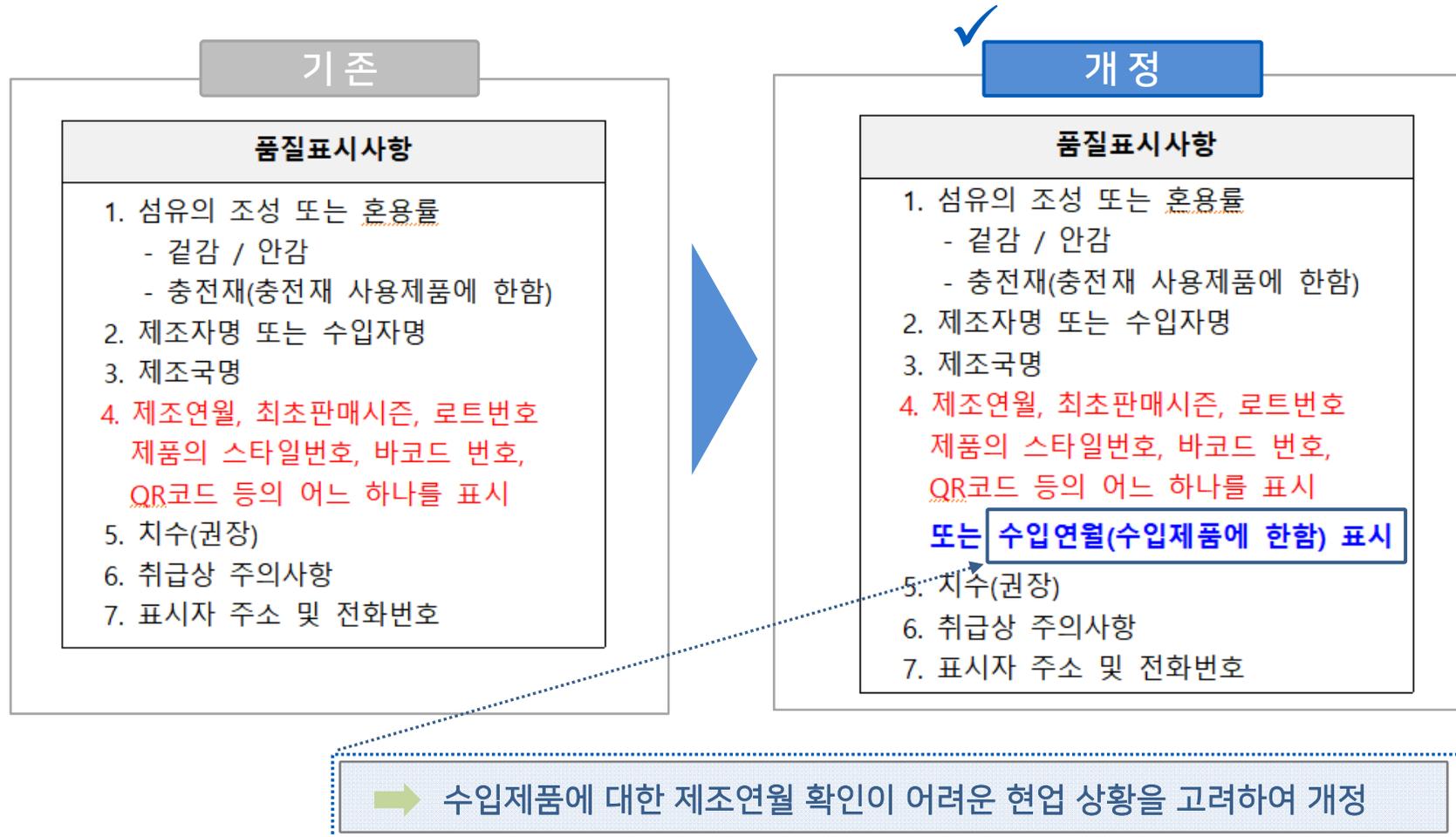
제품예시		제품 표현	
겉감	나일론 100 %	겉감	나일론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등판	폴리에스터 100%	등판	폴리에스터 100%
충전재	오리솜털 50 % 육조털 50 %	충전재	지정의 우모 100%

주요 개정사항(요약)

대상	내용		기 존	개 정	규제 현황	
성인 아동 유아	표시사항 개선	①	'재사용 우모' 규정	사용불가	'재사용 우모' 여부 기재 / 사용가능	완화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사용 · 표현 제한적	사용가능 우모범위 및 표현 확대	완화
		③	제조 및 수입연월 표시	수입연월 표현불가	수입연월 표현가능	완화
		④	혼용률 특례 표시	산정제외 대상 필수기재	산정제외 대상 자율 기재	완화
		⑤	치수 표기	기재 시 KS 방식 필수 충족	표현 방식 자율	완화
		⑥	취급상 주의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內 취급표시방법 기재	KS K 0021 에 의해 표기	동일
아동 유아	제품 세부구분 단순화		제품구분 10종	제품구분 6종	완화	

■ 표시사항 개선 - ③ '제조 및 수입연월 표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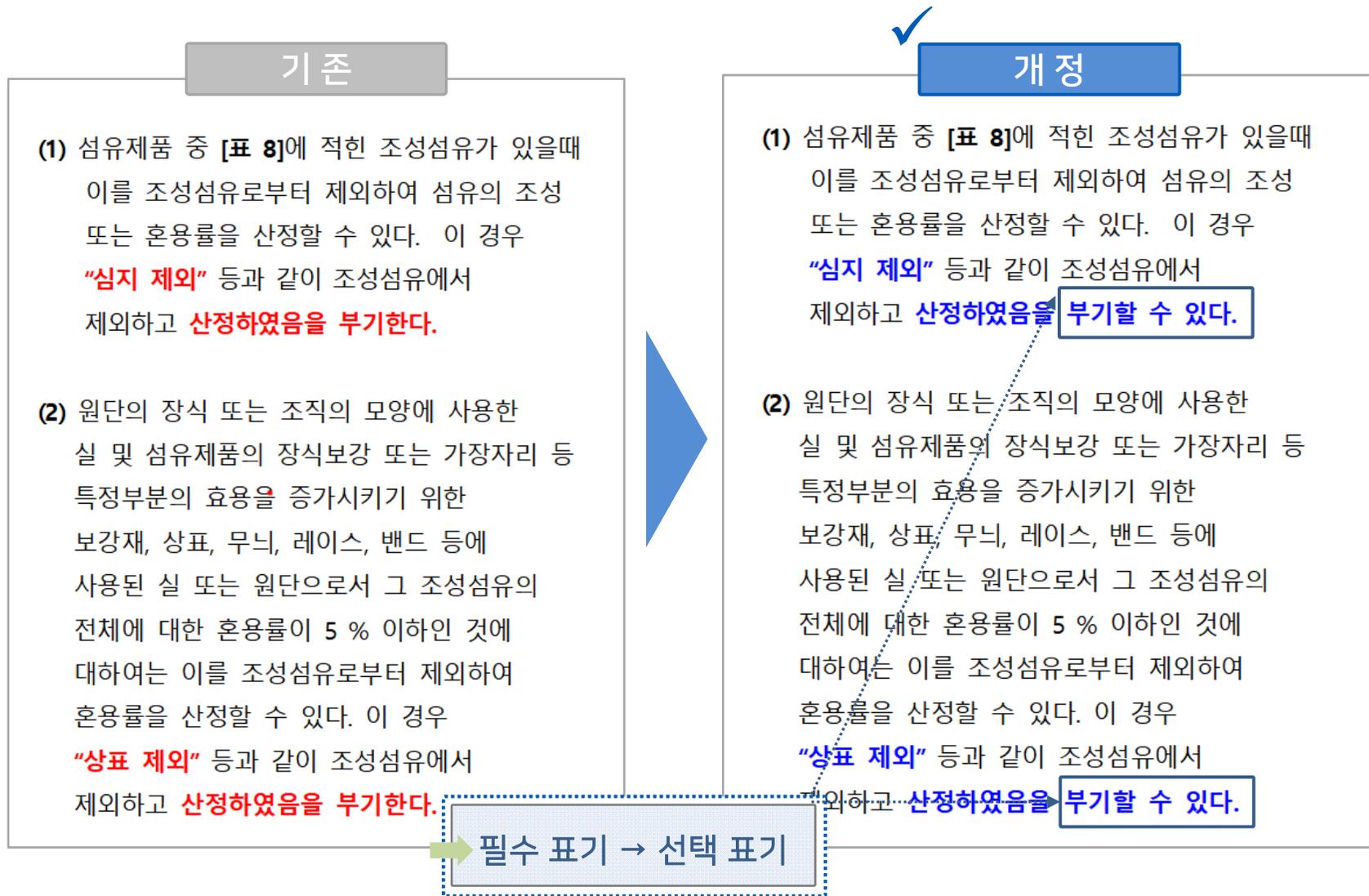
"4. 제조연월 등 표시 →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위해 기재"



주요 개정사항(요약)

대상	내용		기 존	개 정	규제 현황	
성인 아동 유아	표시사항 개선	①	'재사용 우모' 규정	사용불가	'재사용 우모' 여부 기재 / 사용가능	완화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사용 · 표현 제한적	사용가능 우모범위 및 표현 확대	완화
		③	제조 및 수입연월 표시	수입연월 표현불가	수입연월 표현가능	완화
		④	혼용률 특례 표시	산정제외 대상 필수기재	산정제외 대상 자율 기재	완화
		⑤	치수 표기	기재 시 KS 방식 필수 충족	표현 방식 자율	완화
		⑥	취급상 주의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內 취급표시방법 기재	KS K 0021 에 의해 표기	동일
아동 유아	제품 세부구분 단순화		제품구분 10종	제품구분 6종	완화	

■ 표시사항 개선 - ④ '혼용률 특례 표시' 방법



표시사항 개선 - ④ '혼용률 특례 표시' 방법



개정

- (1) 섬유제품 중 [표 8]에 적힌 조성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지 제외"** 등과 같이 조성섬유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부기할 수 있다.**
- (2) 원단의 장식 또는 조직의 모양에 사용한 실 및 섬유제품의 장식보강 또는 가장자리 등 특정부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늬,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서 그 조성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률이 5 %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 제외"** 등과 같이 조성섬유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부기할 수 있다.**

의류제품 품질표시사항

1 섬유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나일론 100% • 충전재: 폴리에스터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심지, 상표, 레이스, 밴드"~~ 등 제외하였음...

2 제조자명 수입자명

XXX 유통

(제외가능)

3 제조국명

중국

4 제조연월

2024. 4. 1.

5 치수

XL

6 주소

00시 00구 00로 568

7 전화번호

02) 123-4567

8 취급상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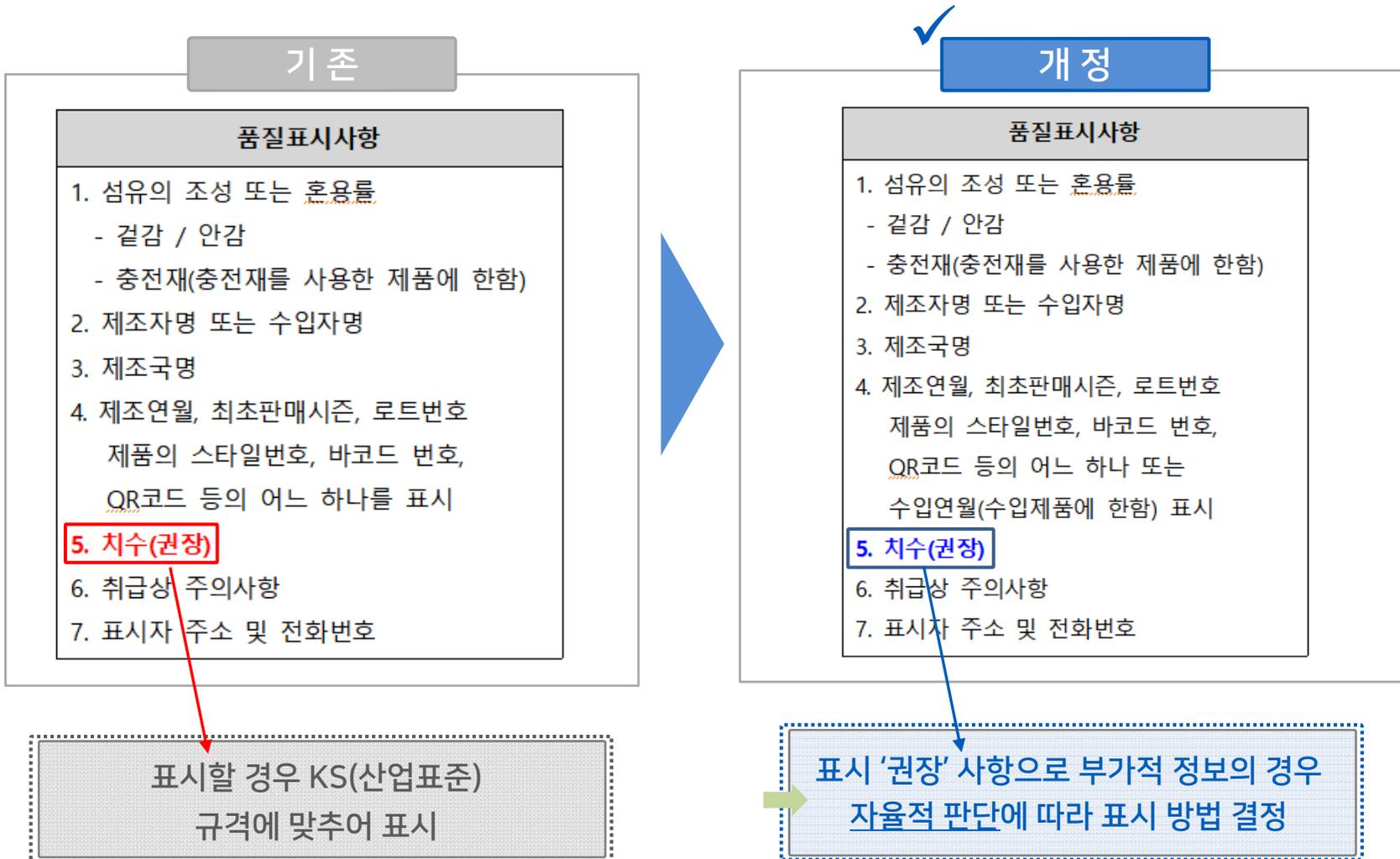
9 제품사용 연령

14세 이상

주요 개정사항(요약)

대상	내용		기 존	개 정	규제 현황	
성인 아동 유아	표시사항 개선	①	'재사용 우모' 규정	사용불가	'재사용 우모' 여부 기재 / 사용가능	완화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사용 · 표현 제한적	사용가능 우모범위 및 표현 확대	완화
		③	제조 및 수입연월 표시	수입연월 표현불가	수입연월 표현가능	완화
		④	혼용률 특례 표시	산정제외 대상 필수기재	산정제외 대상 자율 기재	완화
		⑤	치수 표기	기재 시 KS 방식 필수 충족	표현 방식 자율	완화
		⑥	취급상 주의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內 취급표시방법 기재	KS K 0021 에 의해 표기	동일
아동 유아	제품 세부구분 단순화		제품구분 10종	제품구분 6종	완화	

■ 표시사항 개선 - ⑤ '치수 표시' 방법



표시사항 개선 - ⑤ '치수 표시' 방법

기존

의류제품 품질표시사항

- 1 섬유 조성 또는 혼용율
 - 겉감: 나일론 100% • 충전재: 폴리에스터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2 제조자명 수입자명 XXX 유통
- 3 제조국명 중국
- 4 제조연월 2024. 4. 1.
- 5 치수 110
- 6 주소 00시 00구 00로 568
- 7 전화번호 02) 123-4567
- 8 취급상 주의사항
- 9 제품사용 연령 14세 이상

표시할 경우 KS(산업표준)의 정해진 규격에 맞추어 표시

개정

의류제품 품질표시사항

- 1 섬유 조성 또는 혼용율
 - 겉감: 나일론 100% • 충전재: 폴리에스터 100%
 - 안감: 폴리에스터 100%
- 2 제조자명 수입자명 XXX 유통
- 3 제조국명 중국
- 4 제조연월 2024. 4. 1.
- 5 치수 FREE
- 6 주소 00시 00구 00로 568
- 7 전화번호 02) 123-4567
- 8 취급상 주의사항
- 9 제품사용 연령 14세 이상

표시 '권장' 사항으로 부가적 정보의 경우 자율적 판단에 따라 표시 방법 결정

주요 개정사항(요약)

대상	내용		기 존	개 정	규제 현황	
성인 아동 유아	표시사항 개선	①	'재사용 우모' 규정	사용불가	'재사용 우모' 여부 기재 / 사용가능	완화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사용 · 표현 제한적	사용가능 우모범위 및 표현 확대	완화
		③	제조 및 수입연월 표시	수입연월 표현불가	수입연월 표현가능	완화
		④	혼용률 특례 표시	산정제외 대상 필수기재	산정제외 대상 자율 기재	완화
		⑤	치수 표기	기재 시 KS 방식 필수 충족	표현 방식 자율	완화
		⑥	취급상 주의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內 취급표시방법 기재	KS K 0021 에 의해 표기	변경
아동 유아	제품 세부구분 단순화		제품구분 10종	제품구분 6종	완화	

표시사항 개선 - ⑥ '취급상 주의표시' 방법

기존

7.3 취급상 주의사항

7.3.1 취급상 주의사항은 **[표 10]**에 따라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KS K 0021에 따라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표 10] 취급상 주의표시

(1) 물세탁 방법

취급상 주의사항
물의 온도 95 °C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삶을 수 있다.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60 °C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40 °C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중략)~



개정

7.3 취급상 주의사항

7.3.1 취급상 주의사항은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KS K 0021** 중 **4.2** 번호, **기호 및 기호의 정의** 및 **6. 표시 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KS K 0021

KSKSKSKS

KSKSKSK

KSKSKS

KSKSK

KSKS

KSK

KS

KATS-MCOTIE
KS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표시 방법

KS K 0021:2023

▣ 표시사항 개선 - ⑥ '취급상 주의표시' 방법



개정

7.3 취급상 주의사항

7.3.1 취급상 주의사항은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KS K 0021** 중 4.2 번호,
기호 및 기호의 정의 및 6. 표시 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하 중략).

KS K 0021

KSKSKSKS
KSKSKSK
KSKSKS
KSKSK
KSKS
KSK
KS

KS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표시 방법
KS K 0021:2023



→ **※ 주요 개정사항 SL.34 이후 설명**

주요 개정사항(요약)

대상	내용		기 존	개 정	규제 현황	
성인 아동 유아	표시사항 개선	①	'재사용 우모' 규정	사용불가	'재사용 우모' 여부 기재 / 사용가능	완화
		②	우모제품 표시방법	사용 · 표현 제한적	사용가능 우모범위 및 표현 확대	완화
		③	제조 및 수입연월 표시	수입연월 표현불가	수입연월 표현가능	완화
		④	혼용률 특례 표시	산정제외 대상 필수기재	산정제외 대상 자율 기재	완화
		⑤	치수 표기	기재 시 KS 방식 필수 충족	표현 방식 자율	완화
		⑥	취급상 주의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內 취급표시방법 기재	KS K 0021 에 의해 표기	변경
아동 유아	제품 세부구분 단순화		제품구분 10종	제품구분 6종	완화	



▣ 유아 및 아동 섬유제품 - '제품 세부구분' 단순화

기 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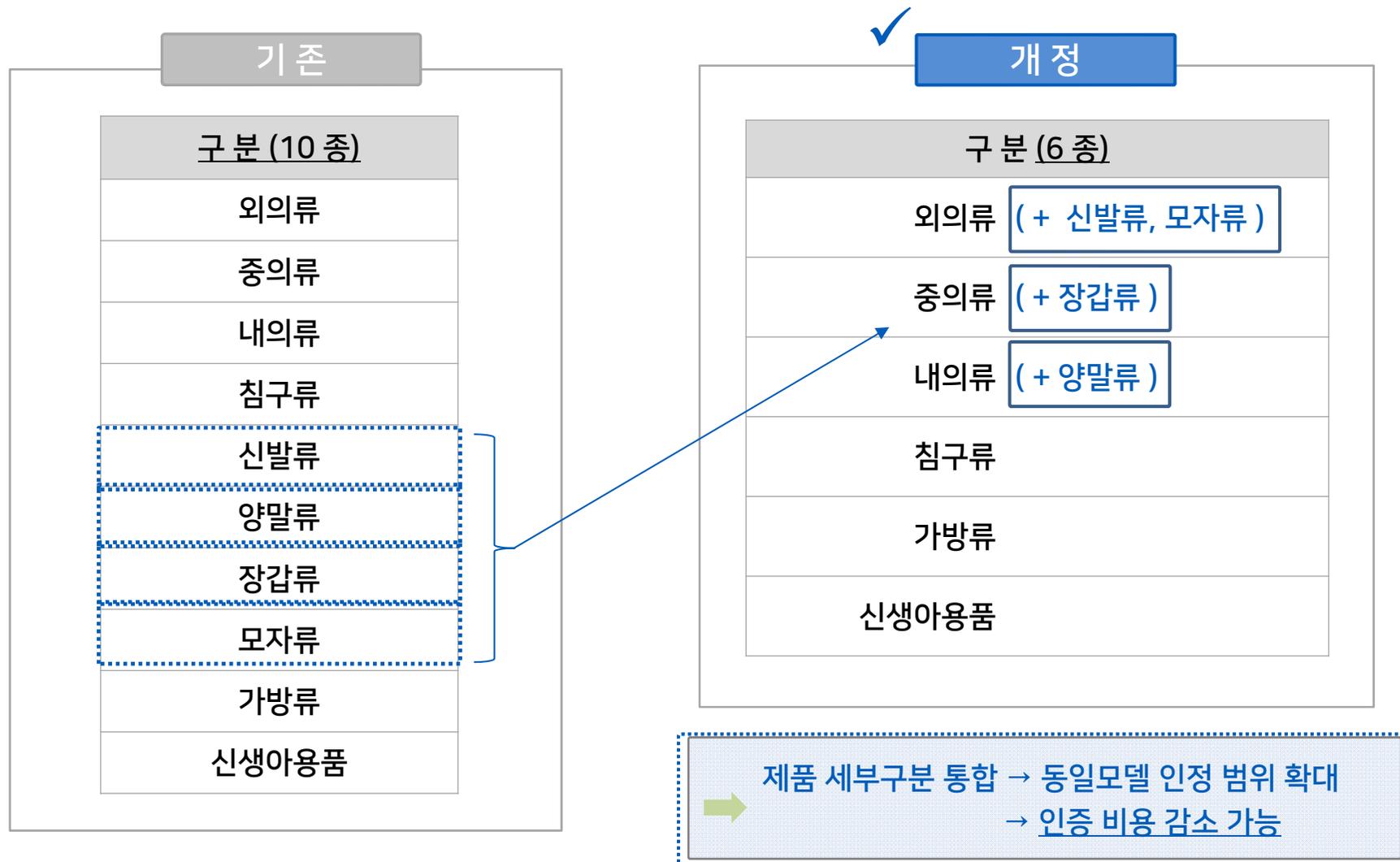
구 분	종 류
외의류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 점퍼, 조끼, 토퍼, 우주복, 카디건, 숄,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미술 가운, 넥타이, 벨트류, 멜빵
중의류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방한대·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줄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합성수지 재질인 바닥매트는 제외), 요,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카펫,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
✓ 신발류	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 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에서 관리))
✓ 양말류	양말, 타이즈, 발 토시,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
✓ 장갑류	장갑, 팔토시
✓ 모자류	모자, 목도리, 귀마개, 머리띠,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뱃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
신생아용품	기저귀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침받이, 배냇저고리, 싸개류, 기저귀밴드, 기저귀매트, 풋퍼프, 욕조, 칫솔장갑, 목받이, 욕조그물, 가리개, 목욕쿠션, 목욕등받이, 목욕장갑, 어깨패드, 삼푸캡, 힙시트, 노리개젓꼭지보관케이스, 모기장

▣ 유아 및 아동 섬유제품 - '제품 세부구분' 단순화

개정

구분	종류
외의류	스웨터, 재킷, 코트, 커버올, 점퍼, 조끼, 토퍼, 우주복, 카디건, 솔, 망토, 한복, 우의, 앞치마, 미술 가운, 넥타이, 벨트류, 멜빵, 모자(모자, 목도리, 헤어밴드, 넥워머, 스카프, 스카프빔 등),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구두, 실내화, 보행기 신발, 샌들, 부츠, 발레화, 기타 신발 (단,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가죽, 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가죽 제품류에서 관리))
중의류	상하복, 원피스, 티셔츠, 남방, 바지, 치마, 블라우스, 수영복, 발레복, 타올류 방한대·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¹⁾ , 장갑, 귀마개, 토시
내의류	팬티 및 팬티류, 잠옷류, 줄바지, 팬티스타킹, 바디슈트, 내의, 목욕가운, 수면조끼, 속치마, 양말류(양말, 타이즈, 스타킹, 레깅스, 덧신, 무릎보호대)
침구류	이불, 베개, 베개 싸개, 커버류, 매트류(합성수지 재질인 바닥매트 ²⁾ 는 제외), 요, 시트류, 침낭, 패드, 쿠션류, 카펫(면적 1m ² 미만), 해먹, 범퍼침대, 덮개류
가방류	가방, 배낭, 핸드백, 지갑, 보온주머니
신생아용품	기저귀커버, 천기저귀, 손수건, 턱받이, 손발싸개, 침받이, 배냇저고리, 싸개류, 기저귀밴드, 기저귀매트, 풋퍼프, 욕조, 칫솔장갑, 목받이, 욕조그물, 가리개, 목욕쿠션, 목욕등받이, 목욕장갑, 어깨패드, 샴푸캡, 헹시트, 노리개젓꼭지보관케이스, 모기장

▣ 유아 및 아동 섬유제품 - '제품 세부구분' 단순화



2

취급주의 (Care Label) 표시방법

KS K 0021 : 2023

■ KS K 0021

KS K 0021 표준이란?

- 표준명 :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기호 및 그 확인 표시방법
 - ➔ 세탁 등의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섬유 제품에 표시하는 기호에 대해 규정하는 표준

섬유제품 표시사항 시 'KS K 0021' 적용 사유

- 안전기준준수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 사항 준수 규정에 따라,
섬유제품의 취급시 주의사항 → KS K 0021 표준 적용하여 제품 표시 사항 기재

품질표시사항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최초판매시점,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 ¹⁾ 또는 수입연월 (수입제품에 한함) 표시
5. 치수(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7.3 취급상 주의사항

7.3.1 취급상 주의사항은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 종류 이상을

KS K 0021 중 4.2 번호, 기호 및 기호의 정의 및

6. 표시 방법에 따라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류, 모기장, 덮개류, 가방류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 KS K 0021 개정사항 개요

개정 사유

- 섬유 소재 및 세탁 방법, 제품의 형태 등 다양해짐에 따라 기존 'KS K 0021 : 2018년' 의 경우 실제 현장과 괴리가 존재하여 취급표시 및 조건의 다양화 필요성 증가
- 미국/일본/중국 등 국가와의 국제표준(ISO)에 부합하는 절충안을 마련하고자 개정 진행

주요 개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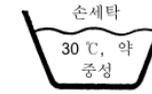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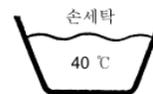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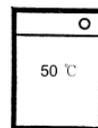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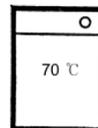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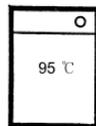
구분		개정 내용
표시기호 변경관련	물세탁	① 온도 및 세제 종류 추가, ② 세탁 강도 세분화
	다림질	① 스팀다림이질 불가 조건 추가, ② 최대 온도 표기 변경
	드라이클리닝	① 용제 추가(+"메테인계, 실리콘계"), ②드라이클리닝 강도 세분화 ③ 웨트클리닝 기호 및 시험 방법 추가
	건조	① 문구 추가("비탈수", "기계건조"), ②기계건조 온도 추가("60°C, 80°C")
기타사항		표시방법 및 기호 부기 방법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물세탁 방법' 주요 개정내용

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①	표현기호의 수	7 개 (101 ~ 107 호)	17 개 (101 ~ 117 호)
②	온도 세분화	기계세탁	95℃ / 70℃ / 60℃ / 50℃ / 40℃ / 30℃
③		손세탁	30℃ / 40℃
④	세탁 강도 세분화		표준 / 약하게 / 매우 약하게
⑤	세제 종류 추가	손세탁	중성세제 / 제한 없음(40℃)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물세탁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번호	기호	기호 정의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95°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 삶을 수 있다. ·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95°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변경사항 요약					
① 삶음 수 있음 → 불가 ② "손세탁 가능" 문구 → 문구삭제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6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7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6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6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5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5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세탁은 안 된다. 			

※ 온도 기호 "°C" 는 생략할 수 있다.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물세탁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95°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 삶을 수 있다. ·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6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세탁은 안 된다.

변경사항 요약		기호 정의
① 70°C 온도 조건 →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95°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7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6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6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5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5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 온도 기호 "°C" 는 생략할 수 있다.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물세탁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95°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 삶을 수 있다. ·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6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107		· 물세탁은 안 된다.

번호	기호	기호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95°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7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6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6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5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5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변경사항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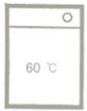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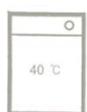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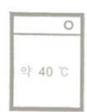
- ① "손세탁 가능" 문구 → 문구삭제
- ② 약하게 조건 → 신설
- ※ 60°C 이하 '약하게' 관리 세분화

※ 온도 기호 "°C" 는 생략할 수 있다.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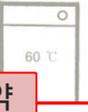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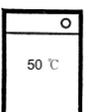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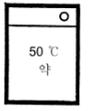
■ '물세탁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번호	기호	기호 정의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95°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 삶을 수 있다. ·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6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세탁은 안 된다.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95°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7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6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변경사항 요약 ① 50°C 온도 조건 → 신설 </div>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5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5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 온도 기호 "°C" 는 생략할 수 있다.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물세탁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번호	기호	기호 정의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95°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 삶을 수 있다. ·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4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6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4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40°C에서 세탁기로 매우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30°C에서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3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세탁은 안 된다.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30°C에서 세탁기로 매우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3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변경사항 요약

- ① "손세탁 가능" 문구 → 문구삭제
- ② 매우 약하게 조건 → 신설

※ 온도 기호 "°C" 는 생략할 수 있다.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물세탁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번호	기호	기호 정의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95°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 삶을 수 있다. ·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40°C에서 세탁기로 일반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6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4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40°C에서 세탁기로 매우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107		· 물세탁은 안 된다.			
			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30°C에서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3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30°C에서 세탁기로 매우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온도 최대 30°C에서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할 수 있다. ·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p>※ 온도 기호 "C" 는 생략할 수 있다.</p>

변경사항 요약

- ① 조건의 세분화
- ② 일반 세탁 추가 → 신설
- ③ 매우 약하게 조건 → 신설
- ④ "손세탁 가능" 문구 → 문구삭제
- ⑤ 중성세제 조건 → 추가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물세탁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101		· 물의 온도 95°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 삶을 수 있다. ·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2		· 물의 온도 6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3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4		· 물의 온도 4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5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도 할 수 있다. ·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106		· 물의 온도 30°C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107		· 물세탁은 안 된다.

번호	기호	기호 정의
114		· 물의 온도 40°C에서 *약하게 손세탁 할 수 있다. (세탁기 사용 불가) · 세제 종류에 제한받지 않는다.
115		· 물의 온도 40°C에서 **매우 약하게 손세탁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116		· 물의 온도 30°C에서 **매우 약하게 손세탁할 수 있다.(세탁기 사용 불가) ·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117		· 물세탁을 하면 안된다.

변경사항 요약

- ① 40°C 조건 추가 → 신설
- ② 30°C 매우 약하게 조건 → 신설

* 약한 손세탁에는 흔들어 빨기, 눌러빨기 및 주물러 빨기가 있다.
** 매우 약한 손세탁은 약한 손세탁 후 비탈수 건조함을 의미한다

▣ '산소 또는 염소 표백 방법' 주요 개정내용

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① 표현기호의 수	6 개 (201 ~ 206 호)	6 개 (201 ~ 206 호)
② 개정사항	변동없음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산소 또는 염소 표백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201		·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202		·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203		·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204		·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205		· 염소계,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 할 수 있다.
206		· 염소계,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변경사항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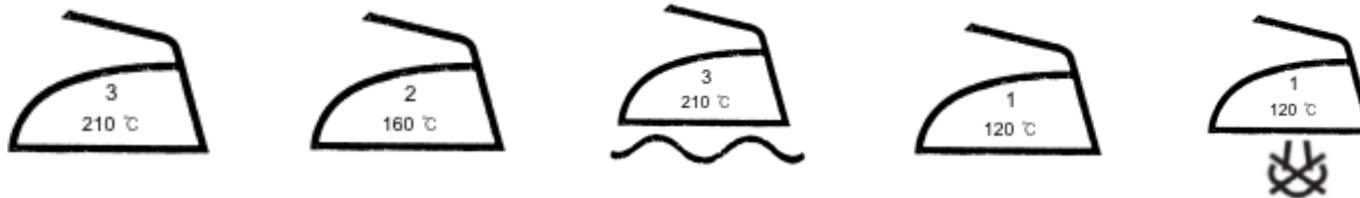
변경사항 없음

번호	기호	기호 정의
201		· 염소계 표백제로만 표백할 수 있다.
202		·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하면 안 된다.
203		· 산소계 표백제로만 표백할 수 있다.
204		·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하면 안 된다.
205		· 염소계 또는 산소계 표백제로만 표백할 수 있다.
206		· 염소계 또는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하면 안 된다.

▣ '다림질 방법' 주요 개정내용

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①	표현기호의 수	7 개 (301 ~ 307 호)	8 개 (301 ~ 308호)
②	온도 표현방법	다림질 가능 온도 구간 표시	다림질 가능 <u>최대 가능 온도</u> 표시
③	스팀 다림질	기호 없음	기호 신설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다림질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번호	기호	기호 정의
301		· 다리미 온도 180 ~ 210°C로 다림질 할 수 있다.
302		· 헹궂을 뒹고 다리미 온도 180 ~ 210°C로 다림질할 수 있다.
303		· 다리미 온도 140 ~ 160°C로 다림질 할 수 있다.
304		· 헹궂을 뒹고 다리미 온도 140 ~ 160°C로 다림질할 수 있다.
305		· 다리미 온도 80 ~ 120°C로 다림질 할 수 있다.
306		· 헹궂을 뒹고 다리미 온도 80 ~ 120°C로 다림질할 수 있다.
307		· 다림질을 하면 안 된다.

변경사항 요약

- ① 가능 온도 구간표시 → 최대 가능 온도
- ② 스팀 다림질 표시기호 → 신설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301		· 다리미 온도 최대 210°C로 다림질 할 수 있다.
302		· 다리미 온도 최대 210°C로 헹궂을 뒹고 다림질 할 수 있다.
303		· 다리미 온도 최대 160°C로 다림질 할 수 있다.
304		· 다리미 온도 최대 160°C로 헹궂을 뒹고 다림질 할 수 있다.
305		· 다리미 온도 최대 120°C로 다림질 할 수 있다.
306		· 다리미 온도 최대 120°C로 헹궂을 뒹고 다림질 할 수 있다.
307		· 다리미 온도 최대 120°C로 스팀을 가하지 않고 다림질할 수 있다. · 다림질은 되돌릴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308		· 다림질을 하면 안 된다.

▣ '드라이클리닝 방법' 주요 개정내용

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①	표현기호의 수	4 개 (401 ~ 404 호)	14 개 (401 ~ 414호)
②	용제 추가	석유계 / 퍼클로로에틸렌	석유계 / 퍼클로로에틸렌 메테인계, 실리콘계
③	강도 단계 표현	없음	표준 / 약하게
④	특수 전문점 기호 추가	없음	
⑤	웨트(Wet) 클리닝 기호 추가	없음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전문적 드라이클리닝 및 웨트클리닝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번호	기호	기호 정의
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다. · 용제의 종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를 사용한다. 	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클로로에틸렌, 석유계, 메테인계 및 실리콘계 용제 등 적합한 용제로 일반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다. ·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한다. 	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클로로에틸렌, 석유계, 메테인계 및 실리콘계 용제 등 적합한 용제로 약하게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4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없다. 	4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계 용제로 일반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은 할 수 있으나, 셀프 서비스는 할 수 없고, 전문점에서만 할 수 있다. 	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계 용제로 약하게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4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부톡시메테인(메테인계) 용제로 일반 드라이클리닝할 수 있다.
			4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부톡시메테인(메테인계) 용매로 약하게 드라이클리닝할 수 있다.

변경사항 요약

- ① 용제 사용가능별 기호생성 → 신설
- ② 일반/약하게 강도표현 → 신설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전문적 드라이클리닝 및 웨트클리닝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다. · 용제의 종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를 사용한다.
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다. ·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한다.
403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없다.
404		· 드라이클리닝은 할 수 있으나, 셀프 서비스는 할 수 없고, 전문점에서만 할 수 있다.

번호	기호	기호 정의
407		·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실리콘계)용제로 일반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408		·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실리콘계)용제로 약하게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409		· 드라이클리닝을 특수 전문점에서만 할 수 있다. (특수전문점이란 취급하기 어려운 가죽, 모피, 헤어 등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
410		·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안된다.

변경사항 요약

- ① 용제 사용가능별 기호생성 → 신설
- ② 일반/약하게 강도표현 → 신설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전문적 드라이클리닝 및 웨트클리닝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다. · 용제의 종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를 사용한다.
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다. ·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한다.
403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없다.
404		· 드라이클리닝은 할 수 있으나, 셀프 서비스는 할 수 없고, 전문점에서만 할 수 있다.

번호	기호	기호 정의
407		·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실리콘계)용제로 일반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408		· 데카메틸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실리콘계)용제로 약하게 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
409		· 드라이클리닝을 특수 전문점에서만 할 수 있다. (특수전문점이란 취급하기 어려운 가죽, 모피, 헤어 등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
410		· 드라이클리닝을 하면 안된다.

변경사항 요약

- ① 기호 상 '전문점' 표시 → 신설
- ② 특수 전문점에 대한 정의 → 신설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전문적 드라이클리닝 및 웨트클리닝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번호	기호	기호 정의
4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다. · 용제의 종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를 사용한다.
4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다. · 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한다.
4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없다.
4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라이클리닝을 할 수 있으나, 셀프 서비스는 할 수 없고, 전문점에서만 할 수 있다.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트클리닝 전문점에서 일반 웨트클리닝 할 수 있다.
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트클리닝 전문점에서 약하게 웨트 클리닝 할 수 있다.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트클리닝 전문점에서 매우 약하게 웨트클리닝 할 수 있다.
4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트클리닝을 하면 안 된다.

변경사항 요약

- ① 웨트(Wet) 클리닝 기호 생성 → 신설
- ② 웨트(Wet) 클리닝 이란 ?
 - ▷ 비이온성 세제를 사용하여 특수 조건의 물세탁 실시
 - ▷ 일반 물세탁을 할 수 없고, 마무리 클리닝 처리과정 필요한 천과 의류에 대한 세탁 방법.

▣ '짜는 방법' 주요 개정내용

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① 표현기호의 수	2 개 (501, 502 호)	2 개 (501, 502 호)
② 개정사항	변동없음	



■ '짜는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번호	기호	기호 정의
501		· 손으로 짜는 경우에는 약하게 짜고, 원심 탈수기인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탈수한다.
502		· 짜면 안 된다.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501		· 손으로 짜는 경우에는 약하게 짜고, 원심 탈수기인 경우는 짧은 시간 안에 탈수한다.
502		· 짜면 안 된다.

변경사항 요약

변경사항 없음

▣ '건조 방법' 주요 개정내용

개정

개정사항	기 존	개 정
① 표현기호의 수	5 개 (601 ~ 605 호)	11 개 (601 ~ 611 호)
② 탈수 방법 추가	-	비탈수 조건 추가
③ 기계건조 온도 조건 세분화	없음	6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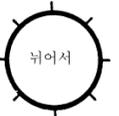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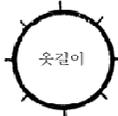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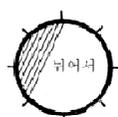
■ '건조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601		· 옷걸이에 걸어 햇빛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2		·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3		· 햇빛에 뉘어서 건조시킨다.
604		· 그늘에 뉘어서 건조시킨다.
601		·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 건조를 할 수 있다.
602		· 세탁

변경사항 요약
① 비탈수 조건추가

번호	기호	기호 정의
601		· 옷걸이에 걸어 햇빛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2		·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3		· 탈수하지 않고, 옷걸이에 걸어 햇빛에서 자연건조시킨다.
604		· 탈수하지 않고,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자연건조시킨다.
605		· 뉘어서 햇빛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6		· 뉘어서 그늘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건조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601		· 옷걸이에 걸어 햇빛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2		·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3		· 햇빛에 뉘어서 건조시킨다.
604		· 그늘에 뉘어서 건조시킨다.
601		·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 건조를 할 수 있다.
602		· 세탁

번호	기호	기호 정의
607		· 탈수하지 않고, 뉘어서 햇빛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8		· 탈수하지 않고, 뉘어서 그늘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9		· 최대 80℃에서 기계건조 할 수 있다.
610		· 최대 60℃에서 기계건조 할 수 있다.
611		· 기계건조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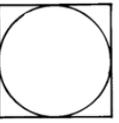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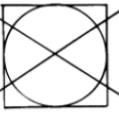
변경사항 요약

① 비탈수 조건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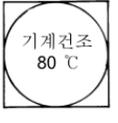
취급주의(Care Label) 표시방법 개정

■ '건조 방법' 기호 및 정의 개정

KS K 0021 : 2018

번호	기호	기호 정의
601		· 옷걸이에 걸어 햇빛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2		· 옷걸이에 걸어 그늘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3		· 햇빛에 뉘어서 건조시킨다.
604		· 그늘에 뉘어서 건조시킨다.
601		·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 건조를 할 수 있다.
602		· 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 건조를 할 수 없다.

KS K 0021 : 2023

번호	기호	기호 정의
607		· 탈수하지 않고, 뉘어서 햇빛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8		· 탈수하지 않고, 뉘어서 그늘에서 자연건조 시킨다.
609		· 최대 80°C에서 기계건조 할 수 있다.
610		· 최대 60°C에서 기계건조 할 수 있다.
611		· 기계건조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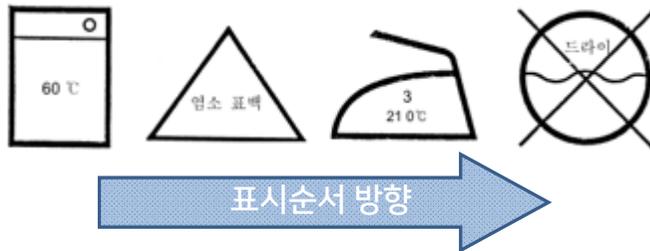
변경사항 요약

- ① 기계건조 온도조건 세분화 → 신설
- ② 기계건조 불가 표시 문구표시 →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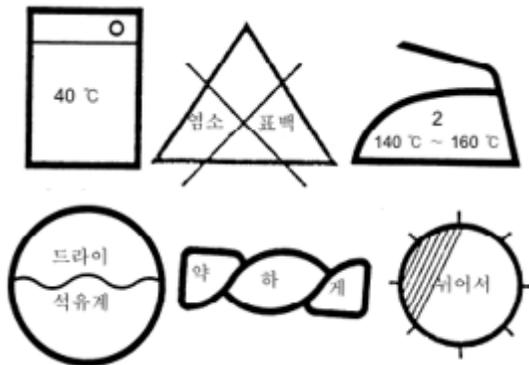
기호의 조합순서 및 표시방법

표시
방법

(예시1)



(예시2)



1. 조합순서는 하기 순서에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표시

- ① 물세탁 방법 (101~117호)
- ② 표백 방법 (201~206호)
- ③ 다림질 방법 (301~308호)
- ④ 드라이클리닝 방법 (401~414호)
- ⑤ 짜는방법 (501~502호)
- ⑥ 건조 방법 (601~611호)

2. (드라이클리닝 및 웨트클리닝) 동시 가능시 모두 표기 가능

3. (자연건조 및 기계건조) 동시 가능시 모두 표기 가능

4. **1줄 표기가 어려울 시 2줄 표기 가능**

5. 표의 기호를 표시할 시에는 KS K 0021에 따라 시험하고 **제품 규격에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기호를 표시함**

6. 통상 염소표백 비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생략 가능

7. 통상 다림질이 불가한 제품에 대해서는 표시생략 가능

8. 물세탁 기호 표시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드라이클리닝 기호 표시 생략이 가능

▣ 기호의 조합순서 및 표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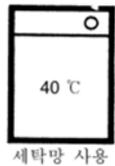
부기
방법

(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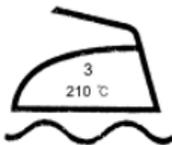
1. 물세탁 방법 중 '중성세제'의 '중성'의 표시문자는 기호의 가장 뒤에 부기한다.

(예시2)



2. "세탁망 사용" 등의 간단한 취급상의 문장을 부기하는 경우는 기호 외의 적당한 곳에 부기한다.

(예시3)



3. 다림질 방법에서 **형질을 나타내는 "  "**의 기호를 부기하는 경우에는 **기호 밑에** 부기한다.

(예시4)



4. 드라이클리닝 및 웨트클리닝 중 드라이클리닝에서 **2가지 방법이 가능할 경우 용제의 종류를 표기**한다.

▣ 기호의 조합순서 및 표시방법

부기
방법

(예시5)



5. 드라이클리닝 및 웨트클리닝 중 드라이클리닝에서, 특수 전문점에서 클리닝 해야 하는 표시는 용제를 나타내는 곳에 “전문점” 이라고 표시한다.

(예시6)



6. 드라이클리닝 및 웨트클리닝 중, 웨트클리닝 해야하는 표시는 드라이 표기 자리에 “웨트”로 표시한다.

(예시7)



7. 섬유취급 표시에서 기타 부기해야하는 취급문자나 기호(분리세탁, 불꽃주의 기호등) 가 있을 경우에는 물세탁 방법 등의 일반 기호를 표시후, 그 하단에 기호를 표시한다.

Your Reliable Partner
SINCE 1965

올바른 제품 유통을 위한 가이드

감사합니다

firi FITI 시험연구원
F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Contact us

www.fiti.re.kr

www.facebook.com/fiti.home

본원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9

T. 02 3299 8004

F. 02 3299 8150

강남센터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5F 9호

T. 02 528 0984

F. 02 528 0990

강북센터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49, 801호

T. 02 3299 8080

F. 02 3299 8089

가산센터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54 월드메르디앙 벤처센터
1차 302호

T. 02 2113 8120

F. 02 2113 8130

산업환경시험센터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3길 21

T. 043 711 8800

F. 043 711 8804

대구센터

대구시 서구 와룡로 498

T. 053 551 2151

F. 053 551 2148

부산센터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48번길 14

T. 051 463 5462

F. 051 462 8803

대전센터

대전시 동구 한밭대로 1297번길 9 종근당 B/D
402호

T. 042 623 5156

F. 042 621 5143

전주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반룡로 110-5 전북테크노파크
2층 209호

T. 063 716 9581

F. 063 716 9583

중국 상해지사

5-B, No.1238, Wuzhong Road, Minhang District,
Shanghai, China

T. +86 21 6405 8571~2

F. +86 21 6405 8573

중국 상해시험센터

3F, Bldg.8, No.566, Huaxu Road, Xujing Town,
Qingpu District, Shanghai, China

T. +86 21 5988 1771

F. +86 21 5988 1772

중국 광주센터

No.1306 Dragonfly Bldg. South Tower, No.49,
HuaXia Road, Zhujiang New Town, TianHe District,
Guangzhou, China

T. +86 20 3869 2445

F. +86 20 3869 2446

중국 연대지사

2F, No.59 Xinhaiyang Rd., Zhifu District, Yantai,
Shandong Province, China

T. +86 535 669 3231

F. +86 535 669 3176

중국 청도사무소

Bldg.C No.608, 187 Guojigongyipincheng,
Route 308, Xiazhuang St., Chengyang District,
Qingdao, Shandong Province, China

T. +86 532 8965 5002

F. +86 532 8965 5003

중국 대련사무소

Rm.702, Jinfeng Bldg., No.130, Jinma RD,
Economic & Technical Development Area, Dalian,
Liaoning Province, China

T. +86 411 8756 4976

F. +86 411 8756 4975

미국 LA사무소

3460 Wilshire Blvd. Suite 1214, Los Angeles,
CA 90010, USA

T. +1 213 788 3301

F. +1 213 788 3302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지사

Gedung Jamsostek Menara Selatan Lantai 7,
Jln. Jendral Gatot Subroto No. 38, Kuningan Barat
Jakarta Selatan 12710

T. +62 21 2525 337

F. +62 21 2525 339

베트남 호치민지사

Nguyen Lam Tower 12F, 133 Duong Ba Trac Street,
1 Ward, 8 Dist, Hochiminh Vietnam

T. +84 8 3851 1831

F. +84 8 3851 1832

베트남 하노이사무소

1914-3, 19F, Keangnam Hanoi Lanmark Tower,
Plot E6, Cau Giay Urban Area, Me Tri Commune,
Tu Liem District, Hanoi

T. +84 4 6282 2338

F. +84 4 6282 2339